



##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추가약정서 Virtual Account Service Agreement - Attachment

\_\_\_\_\_ (“갑”)과 \_\_\_\_\_은행 (“을”)은 20\_\_년\_\_월\_\_일자 "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계약" (이하 “기본서비스계약” 이라 함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.

### 제 1 조 (목 적)

“갑”과 “을”간에 체결된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(이하 “가상계좌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입금 계좌의 지정, 가상계좌서비스의 업무 선택 등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모계좌등의 지정)

구 분	예금과목	계좌번호	예금주
입금용 모계좌			
수수료인출계좌			

### 제 3 조 (기본약정내용)

SMS 서비스기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	수수료정산일자	매월 10 일
가상계좌신청계좌수	총신청계좌수 (        )		

### 제 4 조 (수수료약정내용)

서비스구분	거래수단	수수료금액	“갑” 부담금액
입금수수료	당행창구 인터넷뱅킹/ PC뱅킹/ARS	500 원	
계좌발급수수료	-	100 원	
SMS 서비스 수수료	-	25 원	

### 제 5 조 (추가정보사항)

대표자명		전화번호	
주 소			
e-Mail		업무담당자명	



**제 6 조 (추가 약정서의 효력)**

- (1) 본 추가약정서는 그 체결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,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“기본서비스 계약” 제 17 조 제 3 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 본 추가약정서의 유효기간 중 “기본서비스 계약” 의 효력이 어떠한 사유로든 종료되는 경우, 본 추가약정서도 자동 종료된다.
- (2) 본 추가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. 다만 제 2 조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기본서비스 계약”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“갑” 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제 4 조의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“기본서비스 계약”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다.

20 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

“갑 ”

“ 을 ”